



보내는 사람

□□□ - □□□

행정우편

받는 사람

□□□ - □□□

접 는 선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기능검정원·강사 자격 (□정지·□취소) 결정통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자격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과교육강사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능교육강사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능검정원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 소 처 분 | 년 월 일                |
| 결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지 처 분 |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( 일간) |
|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<p>「도로교통법」 (□ 제106조제4항, □ 제107조제4항)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자격을 (□ 취소, □ 정지)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·도 경찰청 교통계에 출석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</p>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접 는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안내전화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담당자: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        |
| 시·도경찰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직인                   |
| ※ 알려드립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집행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2.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